

# Issue Brief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No.43]

발행처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 발행일 : 2020. 6. 30 | 발행인 : 민무숙

## 제주지역 디지털 성범죄 현황과 정책과제

- 목 차
- 1.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
  - 2.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책 및 대응
  - 3. 디지털 성범죄 현황
  - 4. 향후 정책 개선 방향

이 화 진 <sup>1)</sup>

### 요약

- 인터넷 환경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사용 증가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온라인에서의 성범죄와 불법촬영물의 온라인 소비 등 다수의 가해자가 오프라인 공간에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도 피해를 확장, 지속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 최근 텔레그램 'N 번방'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의 피해가 두드러지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고 제주지역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sup>2)</sup>
-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물 범죄 포함) 피해방지 종합대책 마련 및 관련법률 개정(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비롯하여 피해자 지원 및 관련 콘텐츠의 삭제지원 등을 포함한 대응방안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민·관·경 협력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공중 화장실 등에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를 배부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하여 해당범죄에 대응하는 한편 유관기관 간 협업을 논의하는 등 다각적인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관하여 지역 차원에서의 일회성 캠페인이나 협력 논의를 넘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현황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현안이슈에 대응하고자 함

1)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성인지정책센터 연구위원

2) 제주지역 디지털 성범죄 주요 사건 : 1. 2020년 5월 전국을 돌며 청소년(피해 청소년 11명) 성착취물 영상 231개를 제작하여 협박, 공갈, 성매매, 강간, 유포한 20대 피의자 검거, 카카오톡 채팅방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청소년 유인, 성관계 장면 촬영, 2. 2020년 2월~3월 'N번방' 운영자 '갓갓'이 제작한 성착취물 판매, 3.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선물로 유인, 청소년 알몸영상을 촬영 등 총 17건 수사, 13명 검거, "제주서 'N'번방 같은 성착취물 제작·유포 20대 검거" 2020. 5. 28일 기사 참조



# 1.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

- 디지털 성범죄는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행사하는 성범죄로 사진이나 영상물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따위가 이에 속함
  - 디지털 성범죄는 현실공간에서 물리적인 접촉 없이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로 성적 이미지나 영상물의 제작, 유포, 참여, 소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이 범죄는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이 가지는 무한 복제,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나드는 관계성, 집단적 가해행위가 가능하고 온라인에서의 소비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 의한 가해가 이루어진다는 특성이 있음
- 디지털 성범죄 관련법으로는 불법 촬영물의 제작, 유포와 관련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표 1** 디지털 성범죄 관련법과 처벌내용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 / 시행일자 및 내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p>「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 14조의 2), 시행일자 : 1998. 12.28</p> <p>- 비동의 촬영만 처벌 - 타인의 신체촬영만 처벌(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p>
<p>「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 13조), 시행일자 : 2010. 4. 15</p> <p>- 비동의 촬영, 비동의 유포시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p> <p>- 영리목적의 비동의 촬영물 비동의 유포시 가중처벌(7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p>
<p>「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 14조), 시행일자 : 2013. 6. 19</p> <p>- 동의촬영 후 비동의 유포시 처벌, 비동의 촬영시보다 처벌수위 낮음(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p>
<p>「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 시행일자 : 2018. 12.18</p> <p>- 피해자 자신이 촬영한 촬영물의 비동의유포시 처벌추가 - 촬영과 유포 별도 규정</p> <p>- 비동의 촬영죄 벌금형을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p> <p>- 동의 촬영 후 비동의 유포도 비동의 촬영과 동일하게 처벌</p> <p>- 유포의 객체에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외에 복제물을 추가</p> <p>- 영리목적의 동의, 비동의촬영물, 복제물의 비동의유포시 벌금형 삭제통한 처벌강화 (7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이하 징역으로 개정)</p>
<p>「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 1) 개정일자 : 2020. 5.19</p> <p>- (불법 성적)촬영물 또는 복제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p>
<p>「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제 14조 2) : 시행일자 : 2020. 6. 25</p> <p>- 지인합성 법제화 - 반포 등의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으나 사후에 그 편집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벌금형 상향 조정(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p> <p>-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러한 죄를 범한자 가중처벌(7년이하 징역)</p>
<p>「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제 14조 3) : 개정일자 : 2020. 5. 19</p> <p>-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 1년 이상 유기징역 - 협박으로 권리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 강요 : 3년 이상 유기징역</p>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 / 시행일자 및 내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p>「불법정보의 유통금지」 : 2018년 6월 개정</p> <p>- 음란한 부호·문헌·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금지</p>

##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 / 시행일자 및 내용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제11조)

-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 : 무기징역 혹은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미수범도 처벌
-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 10년 이하 징역
-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 3년 이하 징역
-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 :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2.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책 및 대응

## 1) 중앙정부의 대응

- 정부는 2020년 4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함<sup>3)</sup>
  - 9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TF팀의 의견을 반영하여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처벌의 실효성 강화,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강화, 수요 차단 및 인식개선, 피해자 보호의 내실화 등을 위한 세부과제를 마련하였음
-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처벌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제작행위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판매행위 형량확대를 비롯한 법정형량을 강화하고 형 집행의 내실화를 위하여 신고포상금제 및 잠입 수사 도입으로 초기 단계의 적극 수사가 가능하도록 함
  - 디지털 성범죄물 소지 및 구매행위에 관한 처벌조항 신설함
-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는 법률상에 '피해자'로 명시하여 보호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함
  - 온라인상의 그루밍 범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차단
- 수요차단 및 인식개선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조하고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형성하기 위한 예방 교육을 강화할 예정
  - 이를 위하여 대상별 맞춤형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특히 학생, 학교 밖 청소년, 군 장병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임
  - 디지털성범죄 근절과 예방수칙을 제작·배포하고 관계기관 협력으로 초·중·고 학교에서의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 상담 1388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피해 대처방안에 대한 안내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관련기관 연계를 강화할 예정임
-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24시간 원스톱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선 삭제, 후 심의 제도를 도입하고 주민등록 번호의 신속변경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임
  -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에서는 2020년 3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특별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sup>4)</sup>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피해사례 신청을 받고 신속한 삭제, 심리치료, 상담 및 수사, 법률지원 등 통합 서비스가 제공되며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 없이도 신속한 삭제 지원이 가능함

3) 디지털성범죄,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히"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20. 4. 23)

4) "여가부,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소홀함 없도록 끝까지 지원한다".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 4. 1)



## 2) 제주지역 관련기관의 대응

### 가)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관광지나 공원 등 공공장소의 화장실 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탐지기 설치,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 캠페인,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자료 배부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공공장소의 불법촬영 방지를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내의 여성안전 취약지역을 대대적으로 조사<sup>5)</sup> 하고 여성안전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CCTV 및 불법 촬영 방지를 위한 카메라 탐지기 등을 설치하였음
- 지역 유관기관과의 합동 캠페인은 경찰청,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16개 기관과 협력하여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였음<sup>6)</sup>
-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을 담은 카드뉴스 2종을 제작하여 교육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에 배부하여 홍보하고 있음

###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도 교육청의 디지털성범죄 관련 업무는 민주시민교육과의 학교생활부서에서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관할하고 체육건강과의 학교보건 부서에서 양성평등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이원화된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학교단위의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학내 CCTV 설치 등 스마트 관제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학교폭력 대응 인프라 확충, 피해학생 보호 및 치료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학생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등 대응을 마련하고 있음<sup>7)</sup>
- 아울러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학교 밖 사회단체와도 협력하고 있음

### 다) 제주지방경찰청

-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불법영상 촬영 및 유포와 사이버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이버 수사대 내에 사이버성폭력 전담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음<sup>8)</sup>
- 사이버 성폭력 전담팀은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청 내 여성청소년과를 비롯한 여타 지역의 유관 기관과 협력하고 있음<sup>9)</sup>
- 피해 영상물의 삭제를 위한 원스톱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피해발생 확인 즉시 신속하게 삭제지원을 하고 있음
- 2020년 3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구성 5월말 현재 17건을 수사하여 13명을 검거하는 등 최근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5) 제주특별자치도. 2017. 「여성폭력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지역 조사」 참조

6) “민·관·경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보도자료 (2020. 5. 3)

7) “도교육청,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2019. 8. 2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보도자료.

8) 사이버 성폭력팀은 2018년 불법촬영물 유포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특별팀으로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2019년 1월 전국 지방청에 정식 직제화 되었음

(“경찰, 사이버 조직·인력을 대폭 늘려서 사이버 성폭력·도박 등 총력 대응” 경찰청 보도자료 2019. 1. 25)

9) 최근 제주지방경찰청 주최 유관기관 협력 정책 간담회는 성범죄 관련(2019. 11. 21), 디지털성범죄 관련(2020. 4. 8) 행정기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등이 참석하여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음(“제주지방경찰청, 성범죄 유관기관 합동 정책 간담회 개최. 2019. 11. 20 보도자료. “제주경찰청, 디지털성범죄 유관기관 협업 간담회”. 2020. 4. 8 보도자료 참조)

### 3. 디지털 성범죄 현황

#### 1) 전국 현황

- 검찰청 범죄통계에 의하면 전국 성폭력 범죄는 지난해 3만 건 이상을 차지함
- 전체 성폭력 범죄 중 디지털 성범죄에 포함되는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는 2017년 이후 약 20%(2018년 20.2%, 2019년 19.0%) 정도를 차지하며 최근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죄의 발생건수가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

**표 2** 성폭력 범죄 유형별 발생 건수 (2017-2019)

(단위 : 건, (%))

연도	강간	강제 추행	강간등	강간 등 살인/치사	강간 등 상해/치상	특수강도 강간등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적목적의 장소침입	통신매체 이용음란	공중밀집 장소추행	계
2019	5,826 (18.1)	15,672 (48.8)	182 (0.6)	8 (0.0)	655 (2.0)	43 (0.1)	<b>6,085 (19.0)</b>	646 (2.0)	<b>1,378 (4.3)</b>	1,609 (5.0)	32,104 (100.0)
2018	5,555 (16.9)	15,981 (48.7)	144 (0.4)	7 (0.0)	716 (2.2)	34 (0.1)	<b>6,615 (20.2)</b>	422 (1.3)	<b>1,265 (3.9)</b>	2,085 (6.4)	32,824 (100.0)
2017	5,412 (18.4)	14,339 (48.8)	192 (0.7)	8 (0.0)	736 (2.5)	56 (0.2)	<b>5,249 (17.9)</b>	477 (1.6)	<b>1,115 (3.8)</b>	1,773 (6.0)	29,357 (100.0)

자료 : 대검찰청 범죄통계. 2020.

**표 3** 전국 학교 폭력 피해 유형

(단위 : %)

- 교육부에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디지털 범죄와 관련이 있는 사이버 괴롭힘은 전체 폭력 범죄대비 2019년 기준 8.9%, 성추행 및 성폭행은 3.9%로 지난해 대비 감소하였음

구분(%)	언어 폭력	집단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스토킹	신체 폭행	금품 갈취	강제 심부름	성추행 · 성폭행
2019년1차	35.6	23.2	<b>8.9</b>	8.7	8.6	6.3	4.9	3.9
2018년1차	34.7	17.2	<b>10.8</b>	11.8	10.0	6.4	3.9	5.2
2017년1차	34.1	16.6	<b>9.8</b>	12.3	11.7	6.4	4.0	5.1

자료 : : 교육부 2019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2019.8.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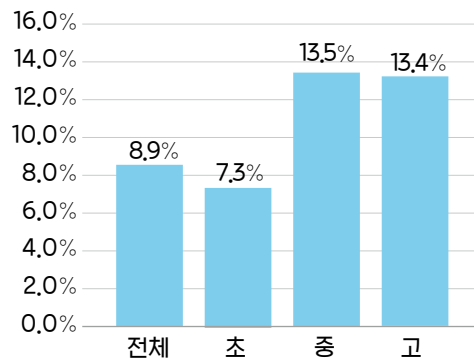
- 학교유형별 사이버 괴롭힘 비율은 2019년 기준 중학교(13.5%)와 고등학교 학생(13.4%)의 비율로 높게 나타나 언어폭력과 집단 따돌림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표 4** 전국 학교폭력 피해 유형(초 · 중 · 고)

(단위 : %)

구분 (%)	언어 폭력	집단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스토킹	신체 폭행	금품 갈취	강제 심부름	성추행 · 성폭행
전체	35.6	23.2	<b>8.9</b>	8.7	8.6	6.3	4.9	3.9
초	35.1	23.8	<b>7.3</b>	8.8	9.2	6.5	5.3	3.9
중	35.8	21.9	<b>13.5</b>	8.9	6.7	5.6	4.0	3.6
고	39.4	20.6	<b>13.4</b>	7.4	6.3	5.0	3.9	4.0

자료 : : 교육부 2019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2019.8.26.)





## 2) 제주지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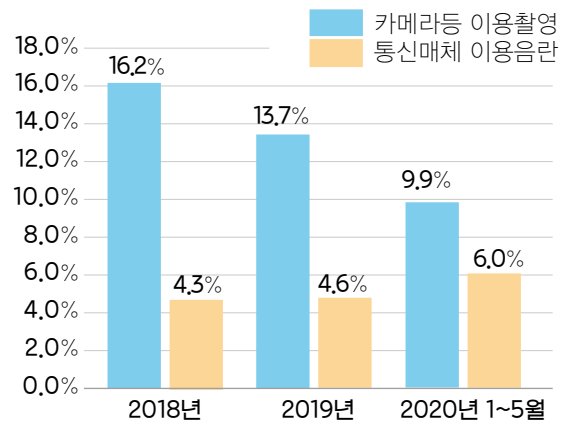
### 가) 제주지방경찰청 범죄통계

- 제주지역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는 2019년 505건으로 집계되었고 이는 전체 인구 대비 10만명당 발생비로 계산하면 약 78건으로 전국대비 높은 발생비를 나타내고 있음
-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전체 성폭력 범죄 중 디지털 성범죄의 비율은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가 2019년 기준으로 (전국 19.0%, 제주 13.7%)로 전국에 비해 약간 낮고, 통신매체 음란 범죄는 (전국 4.3%, 제주 4.6%)로 전국수치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범죄 발생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반면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 발생 비율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표 5** 제주지역 연도별 성범죄 발생현황

(단위 : 건, (%))

구분 (건, %)	총 계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목적다중 이용장소침입
2020년 (1~5월)	182 (100.0)	151 (83.0)	18 (9.9)	11 (6.0)	2 (1.1)
2019년	505 (100.0)	404 (80.0)	69 (13.7)	23 (4.6)	9 (1.8)
2018년	489 (100.0)	382 (78.1)	79 (16.2)	21 (4.3)	7 (1.4)



자료 : 제주지방경찰청 내부자료 2020.

**표 6** 제주도 학교 폭력 피해 유형

\* 중복 응답 (단위 :명, (%))

- 제주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사이버 괴롭힘은 2019년 기준 7.8%로 나타나 전국수치(2019년 8.9%, 표2 참조)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성추행 및 성폭행(2019년 전국 3.9%, 제주 4.0%)은 전국수치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임

구분 (명, %)	언어 폭력	집단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스토킹	신체 폭행	금품 갈취	강제 심부름	성추행· 성폭행	합계
2019년 1차	694 (35.9)	446 (23.1)	150 (7.8)	137 (7.1)	165 (8.5)	138 (7.1)	123 (6.4)	78 (4.0)	1,931 (100.0)
2018년 1차	688 (34.1)	335 (16.6)	200 (9.9)	230 (11.4)	230 (11.4)	133 (6.6)	93 (4.6)	106 (5.3)	2,015 (100)
2017년 1차	572 (33.8)	267 (15.8)	138 (8.1)	184 (10.9)	223 (13.2)	128 (7.6)	106 (6.3)	76 (4.5)	1,694 (10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온라인 조사)결과.(2019.8.28.)

### 나. 제주지역 여성폭력 피해지원 분석(상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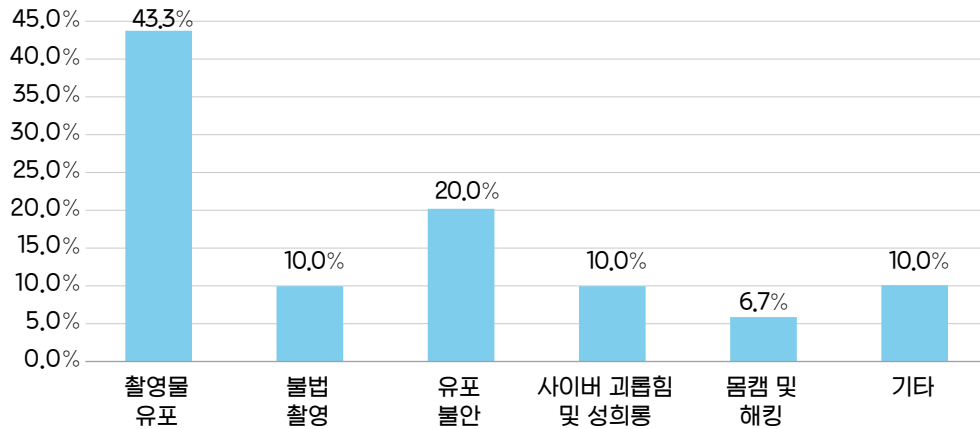
- 여성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의 상담실적 중 디지털 성범죄는 2019년 48건, 2020년 5월말 현재 총 30건으로 나타남
  - 2020년 5월말 현재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상담건수 30건 중 높은 비율을 나타낸 유형은 촬영물 유포(43.3%), 유포불안(20.0%) 사이버 괴롭힘 및 불법촬영 순으로 나타남

**표 7** 1366 제주센터 상담 건수 중 디지털성범죄 유형(2020. 1월~5월)

(단위 :건, (%))

구분 (건, %)	합계	촬영물 유포	불법촬영	유포불안	사이버 괴롭힘및 성희롱	몸캠 및 해킹	기타
전체	30 (100.0)	13 (43.3)	3 (10.0)	6 (20.0)	3 (10.0)	2 (6.7)	3 (10.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내부자료. 2020.



- 제주지역 성폭력 상담소 상담실적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현황은 2018년 기준으로 카메라 이용 촬영범죄 관련 상담은 약간 증가(2017년 6.0%, 2018년 7.9%)한 반면 통신매체 이용음란 범죄 상담은 대폭 증가(2017년 2.2%, 2018년 10.0%)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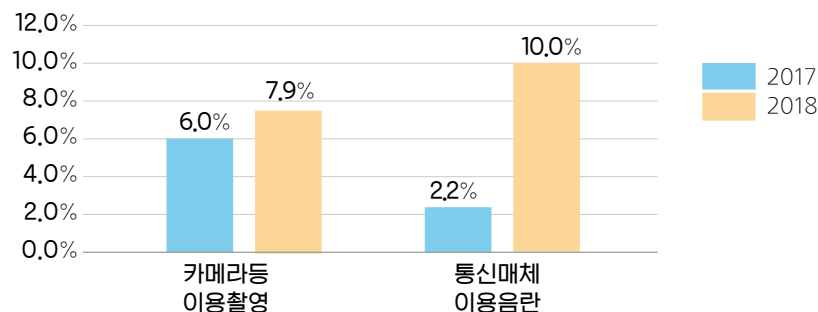
**표 8** 제주지역 성폭력 상담 현황(성폭력 상담소)

(단위 :명, 건, (%))

연도	소계	강간· 유사강간	성추행	스토킹 성희롱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기타
2019	2,011 (100.0)	945 (47.0)	581 (28.9)	212 (10.5)	105 (5.2)	86 (4.3)	82 (4.1)
2018	280 (100.0)	87 (31.1)	76 (27.1)	18 (6.4)	22 (7.9)	28 (10.0)	49 (17.5)
2017	183 (100.0)	64 (35.0)	80 (43.7)	10 (5.5)	11 (6.0)	4 (2.2)	14 (7.7)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내부자료. 2020.

주 : 2017, 2018년 수치는 상담 인원수, 2019년 수치는 상담건수로 동일비교 불가



## 4. 향후 정책 개선 방향

### 개정된 관련법에 대한 홍보강화와 인식개선

-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처벌내용이 구체화되고 처벌수위도 강화됨, 이에 대한 홍보강화 필요
- 불법 영상물의 생산, 유통, 소비와 관련된 행위과정에서 죄의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을 강화해야 함

### 가해자 관리 및 교정 대책 마련

- 청소년들이 가해행위에 대하여 범죄인 줄 모르고 하는 경우가 상당하여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최근 발표에 의하면<sup>10)</sup> 성착취물 구매자들의 연령이 20대(79.4%), 30대(13.0%), 10대(5.4%) 순으로 나타나 젊은 세대의 성착취물 구매행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가해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더불어 장기적 관점의 관리 및 교육방안 마련이 필요함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유형 중 영상물 유포와 유포 불안(1366 상담 통계 참조)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 사이버 상의 영상물 삭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피해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 상에서의 홍보를 강화해야 함
-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고 편리하게 지원의뢰가 가능하도록 피해 영상물 삭제를 위한 홍보를 확대하고 지역차원에서 관련업무 지원을 위한 예산 및 인력증원 검토가 필요함

### 효율적 예방교육 체계 마련 및 교육의 내실화

-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그루밍 수법으로 정서적으로 취약한 10대 청소년들 대상으로 행하는 범죄가 많은 만큼 범죄관련 체계적인 연구와 새로운 범죄유형에 대한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강화와 내실화가 필요함
- 피해자 및 피해의 특성이 선물이나 관심표현 등 소외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해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및 법률적 지원, 청소년 복지 등 다각적인 모색이 필요함
- 제주도교육청에 양성평등 교육 및 성폭력 전담부서의 설치 권장
- 학교현장에서의 인식개선 교육 강화와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관련기관(행정기관, 교육기관, 사법기관 등) 참여하는 협력체계 구축

### 디지털 성폭력 피해유형 및 연령별 특성 관련 조사 연구

- 카메라 이용 촬영 및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죄 등을 포함한 디지털 성폭력에 관한 통계자료 생산이 부족함
- 관련분야 통계자료 생성 및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원인진단 및 정책방향 수립이 필요

10) 강원경찰청, 아동성착취물 구매자 131명 검거. 강원경찰청 보도자료(2020. 7. 1)

